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40
----------	-----

2024. 11. 27.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재무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7.)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처분)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사유	방법			
1	래미안라클래시아 파트 매각 (재무과)	처분	매각	삼성로 651 (삼성동 189)	59.99	1,721,000

#### 4. 세부내용

##### ○ 재산의 표시

(단위: m<sup>2</sup>, 천원)

재산의 표시			취득일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강남구 삼성동 189, 107 동 2502호	대	59.99m <sup>2</sup>	1994.12.29.	1,721,000천원

##### ○ 매각개요

- 매각사유 : 재산에 대한 활용 및 계획이 없어 시책심의회를 통해 매각 결정
- 재산이력

구분	재건축 전 (상아아파트)	재건축 후 (래미안 라클래시)	현재
용도	행정재산(공용)		일반재산
재산 관리관	교육지원과	총무과(2022. 2. 25.)	재무과(2023. 2. 1.)
활용 목적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 (2018. 12. 31.종료)	공무원 임대용 숙소로 운영 계획하였으나 철회 (2023. 1.)	행정목적 기능 상실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변동 내용	1994. 12. 29.(취득)	2022. 1. 5.(보존등기)	2023. 5.(용도변경)
면적	91.54m <sup>2</sup>	59.99m <sup>2</sup> (25평형)	59.99m <sup>2</sup> (25평형)
재산 가격	119,000천원 (매입가격)	1,688,000천원 [2023년 공동주택가격(안)]	1,721,000천원 [2024년 공동주택가격(안)]

- 추진경과 및 타부서 소요조회 결과

추진시기	주요내용	재산관리관
1994. 12. 29.	매입(상아아파트)	총무과
2001. 6월 ~	UCR 학사관리 계약에 따른 학장 숙소 제공	총무과
2007. 7. 23.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총무과→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2017. 12월 ~	아파트 재건축	교육지원과
2018. 12. 31.	UCR(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학사관리 계약 종료	교육지원과
2019. 4. 23.	재산활용계획 조회(1차) - 활용계획 없음	교육지원과
2022. 1. 5.	재건축사업완료로 소유권보존등기(래미안 라클래스 아파트)	교육지원과
2022. 1. 19.	재산활용계획 조회(2차)	교육지원과
2022. 2. 8.	공무원 임대용 숙소 운영 계획 제출(총무과)	교육지원과
2022. 2. 25.	재산관리관 변경(교육지원과→총무과)	총무과
2023. 1월	직원 숙소 운영 계획 철회 및 재산활용계획 조회(3차) - 활용계획 없음	총무과
2023. 2. 1.	재산관리관 변경(총무과→재무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재무과로 재산관리관 지정	재무과
2023. 5. 19.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행정재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재무과
2023. 7. ~2024.1.	재산활용계획 조회(1~3차) - 활용계획 없음	재무과
2024. 3. 9.	재산활용계획 조회(4차)	재무과
2024. 4. 8.	재난관리 근무자 주거 공간 마련 활용 계획 제출(재난안전과)	
2024. 5. 28.	검토의견 알림(재무과→재난안전과) - 재난대응 직원 주거시설 지원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필요 등	재무과
2024. 8. 9.	2024년 제4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 결과 : 즉시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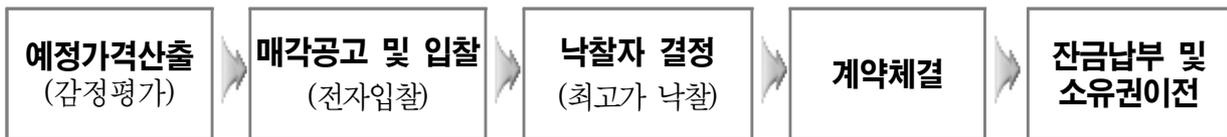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유찰시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매각예정가격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체감하여 예정가격 조정 가능
- 다만,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수의계약 가능

○ 추진계획

- 매각결정 절차



○ 매각절차



※ (참고) 동일 평형 기준 실거래가(국토교통부)

계약월	매매가	층	계약월	매매가	층
2024년 4월	24억7천	12층	2022년 5월	24억3천	4층
2023년 9월	24억7천	3층	2021년 11월	26억7천	28층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 가. 법적 검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sup>1)</sup>해야함.
- 이 때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공시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개정 2010.06.25., 2015.11.06., 2022.10.14.>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산정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은 2024. 1. 1. 기준으로 단위면적(m<sup>2</sup>)당 28,688,114원<sup>2)</sup>임.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은 총면적이 59.99m<sup>2</sup>로 면적이 2,000m<sup>2</sup>를 넘지 않으나, 기준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약 1,721,000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래미안라클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sup>3)</sup>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일반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sup>4)</sup>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2-76호) 제17조<sup>5)</sup>

2)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참조

3)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4)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5) 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유찰시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매각예정가격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체감하여 예정가격 조정 가능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15억원이상의 매매·교환은 1천분의 7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므로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2. 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 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1. 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6)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매각대금을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평정해야 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음.

## 나. 종합 의견

- 본 안건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행정시설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미활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낮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 해당 주택은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임.
-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2024. 1. 1. 기준으로 단위면적(m<sup>2</sup>)당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8,688,114원<sup>7)</sup>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의회 의결을 받으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을 토대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매각가격을 최종결정해야 할 것임.

- 부동산 경매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낙찰률은 40.0%로 전월보다 3.3% 포인트 상승했으며, 서울 낙찰률은 41.3%로 전월보다 4.3% 포인트 떨어졌으나, 서울의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0%로 전월 (94.3%)보다 2.7% 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2022년 6월 (110.0%)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강남구의 평균 낙찰가율은 107.5%로 가장 높다고 함.
- 향후 주택매각의 추진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적절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증가된 세입은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sup>8)</sup>
- 마지막으로 매각과 보유시 재산가치에 대한 비교와 향후 재산가치 상승 및 다른 이용 다양성 등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하여 적정 공유재산을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의 자료에 따르면 추진경과에 관한 자료 중 공유재산심의회의(2024.9)를 거친 것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6면의 자료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7)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참조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440
------	-----

제출연월일 : 2024년 11월 4일

제 출 자 : 강 남 구 청 장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처분)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사유	방법			
1	래미안라클래시 아파트 매각 (재무과)	처분	매각	삼성로 651 (삼성동 189)	59.99	1,721,000

### 3. 세부내용

#### 사업명 :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

#### □ 재산의 표시

단위: m<sup>2</sup> 천원

재산의 표시			취득일	재산가액
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강남구 삼성동 189, 107동 2502호	대	59.99	1994.12.29.	1,721,000

#### □ 매각개요

- 매각사유 : 재산에 대한 활용 및 계획이 없어 시책심의회를 통해 매각 결정
- 재산이력

구 분	재건축 전(상아아파트)	재건축 후(래미안 라클래시)	현 재
용 도	행정재산(공용)		일반재산
재산관리관	교육지원과	총무과(2022. 2. 25.)	재무과(2023. 2. 1.)
활용목적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학장 숙소 (2018. 12. 31.종료)	공무원 임대용 숙소로 운영 계획하였으나 철회(2023. 1.)	행정목적 기능 상실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변동내용	1994. 12. 29.(취득)	2022. 1. 5.(보존등기)	2023. 5.(용도변경)
면 적	91.54m <sup>2</sup>	59.99m <sup>2</sup> (25평형)	59.99m <sup>2</sup> (25평형)
재산가격	119,000천원 (매입가격)	1,688,000천원 [2023년 공동주택가격]	1,721,000천원 [2024년 공동주택가격]

#### ○ 추진경과 및 타부서 소요조회 결과

추진시기	주요내용	재산관리관
1994. 12. 29.	매입(상아아파트)	총무과
2001. 6월 ~	UCR 학사관리 계약에 따른 학장 숙소 제공	총무과
2007. 7. 23.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총무과→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추진시기	주요내용	재산관리관
2017. 12월 ~	아파트 재건축	교육지원과
2018. 12. 31.	UCR(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학사관리 계약 종료	교육지원과
2019. 4. 23.	재산활용계획 조회(1차) - 활용계획 없음	교육지원과
2022. 1. 5.	재건축사업완료로 소유권보존등기(래미안 라클래시 아파트)	교육지원과
2022. 1. 19.	재산활용계획 조회(2차)	교육지원과
2022. 2. 8.	공무원 임대용 숙소 운영 계획 제출(총무과)	교육지원과
2022. 2. 25.	재산관리관 변경(교육지원과→총무과)	총무과
2023. 1월	직원 숙소 운영 계획 철회 및 재산활용계획 조회(3차) - 활용계획 없음	총무과
2023. 2. 1.	재산관리관 변경(총무과→재무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재무과로 재산관리관 지정	재무과
2023. 5. 19.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행정재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재무과
2023. 7.~2024.1.	재산활용계획 조회(1~3차) - 활용계획 없음	재무과
2024. 3. 9.	재산활용계획 조회(4차)	재무과
2024. 4. 8.	재난관리 근무자 주거 공간 마련 활용 계획 제출(재난안전과)	
2024. 5. 28.	검토의견 알림(재무과→재난안전과) - 재난대응 직원 주거시설 지원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필요 등	재무과
2024. 8. 9.	<b>2024년 제4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 결과 : 즉시매각</b>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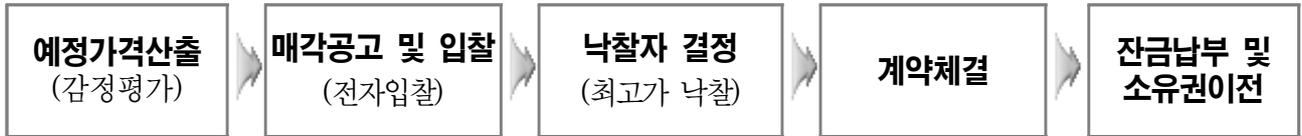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유찰시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매각예정가격의 10%이내의 금액만큼 체감하여 예정가격 조정 가능
- 다만,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수의계약 가능

□ **추진계획**

○ 매각결정 절차



○ 매각절차



◎ 동일 평형 기준 실거래가(국토교통부)

계약월	매매가	층	계약월	매매가	층
2024년 4월	24억7천	12층	2022년 5월	24억3천	4층
2023년 9월	24억7천	3층	2021년 11월	26억7천	2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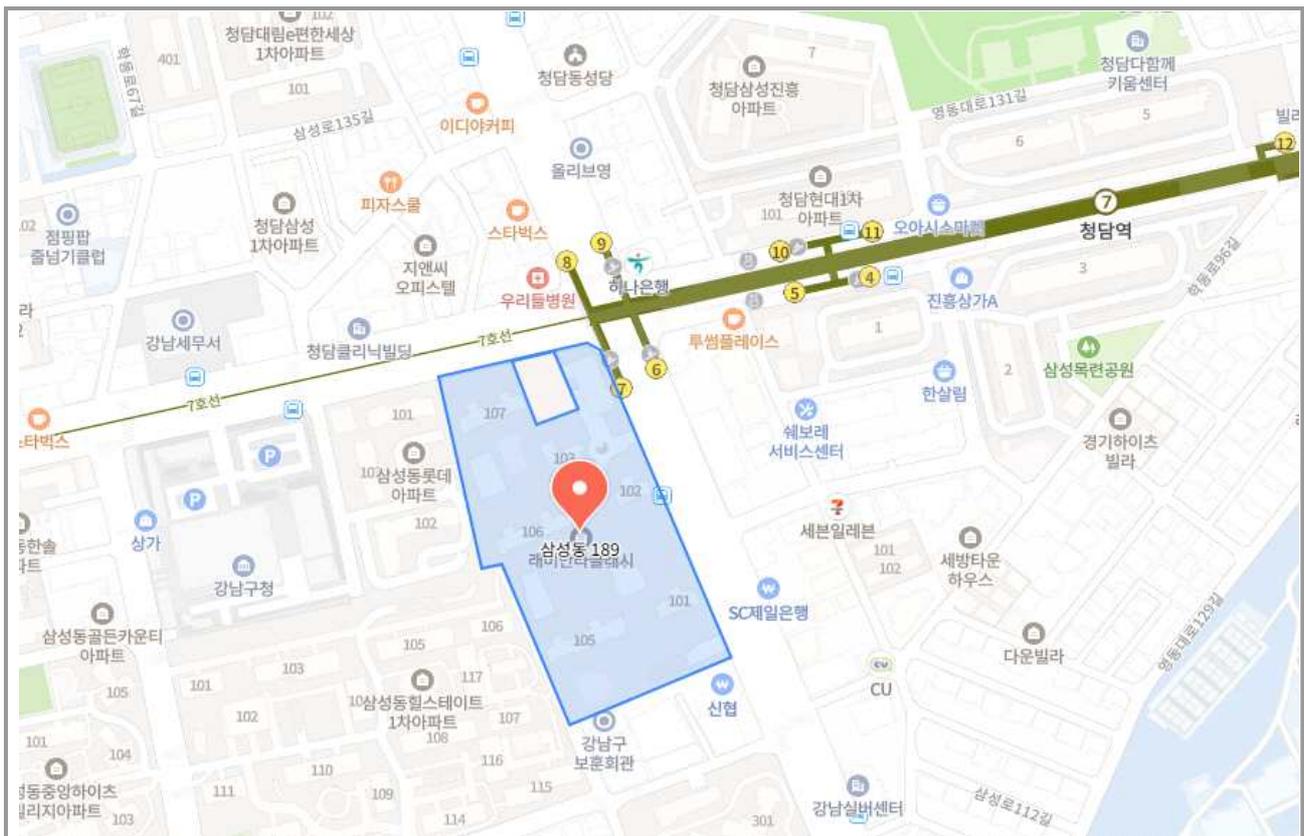
□ **추진효과**

○ 미활용 재산의 매각을 통한 구 재정수입 확충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

## ■ 평면도 및 내부사진



## ■ 위치도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주 문>

미활용중인 불필요한 재산 매각을 통한 구 재정 수입 확보 및 적극적 재산 관리를 위하여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에 대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결(가결)한다.

##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

### ○ 사업명 : 래미안라클래시아파트 매각

1. 목 적 : 미활용 재산 매각을 통한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적극적 재산 관리
2. 위 치 : 강남구 삼성로 651 (삼성동 189) 107-2502
3. 면 적: (전용면적) 59.99㎡
4. 재산가액 : 1,721,000천원(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5. 계약방법 : 일반입찰

#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 액	
취 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1	1,721,000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1	1	1,721,000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기 타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 202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매각시기 (예정)	매각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1		삼성로 651 (삼성동 189)	59.99	1,721,000	2025. 3.	미활용재산